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금융경제 상 위기 시 예금 보호한도 초과 지급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6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금융·경제 상 위기 시 예금보호한도 초과 지급 ... | 3 |



## I. 제안경위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12.

다. 회 부 일 : 2024. 8. 13.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8. 12.

다. 회 부 일 : 2024. 8.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 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 Ⅲ. 검토의견: 금융·경제 상 위기 시 예금 보호한도 초과 지급

-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 등 예금자 등을 보호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b>예금자보호법</b>                                                                                                                                                                               |                                                                                                                                                                                                       |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b>신용협동조합법</b>                                                                                                                                                                              |                                                                                                                                                                                                       |
|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br>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br><u>&lt;후단 신설&gt;</u> |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br><u>해당</u> -----<br>-----<br>-----, 이 경우 중앙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음하여 변제하는 예탁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등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p> |

□ 현행 「예금자보호법」 1) 및 「신용협동조합법」 2)은 각각 금융회사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예금 보호 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 두 법률의 시행령들 3)은 예금 보호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동일

- 1) 「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들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들이 해당 부보증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하게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이 보호되며,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sup>4)</sup>에서 각각 예금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체국예금<sup>5)</sup>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한도(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예금 보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뱅크런<sup>6)</sup> 등의 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보호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 4) 각각의 업권은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 5) 우체국예금만 예외적으로 전액을 보장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6)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으로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고 있어, 현재도 위기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상향<sup>7)</sup>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만, 금융·경제 위기 시에 보다 신속하게 보호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려는 취지인데, 현재도 예금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예금 등의 전액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13 |

7) 외환위기 시 금융기관 예금 전액보호 발표('97.11.19) 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97.12.5)을 통해 발표일로부터 소급하여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한 사례가 있음